

#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 김병진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 상정·의결(2017. 10. 17)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병진 의원)

### □ 제안이유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해석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등의 규정을 두어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의 정의와 일치(안 제2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4조, 제61조)

다. 기금운용 회계관직 명칭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규정과 일치(안 제5조 제2항, 제3항)

- 라.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회 연임 횟수 제한 및 연임 제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을 변경(안 제6조)
- 마.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6조의 2)
-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1조 등)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 4) 「지방회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의사항 : 위생관리과

라. 입법예고(2017. 9. 29. ~ 10. 10.)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강희순)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보완하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 안 제2조에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과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 안 제6조에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위원 중 '한국음식업중앙회강서구지회장'을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로 변경하여 연임 제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함

○ 검토 결과

- '한국음식업중앙회강서구지회'는 식품위생업 관련 단체 중 하나의 단체에 불과함에도 그 대표자가 자동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독점성으로 공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에 의구심의 여지가 있음
-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능단체의 대표자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가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의 신설은 기금운용심의회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행정기구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붙임 : 관계법령 1부.

## □ 식품위생법

[시행 2017.5.19.] [법률 제13332호, 2015.5.18., 일부개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 ③ 생략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15.5.18., 2016.12.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7.5.19.] [대통령령 제27997호, 2017.4.18., 일부개정]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약칭: 건강기능식품법 )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2015.2.3.>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1.]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5.1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삭제 <2015.2.3.>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

[시행 2017.4.7.] [총리령 제1386호, 2017.4.7., 일부개정]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0., 2010.10.29., 2011.4.1., 2014.8.7., 2015.1.7., 2016.2.4.>

1. 삭제 <2012.8.1.>
2. ~ 8. 생략

## □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6.5.27.]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93호, 2016.5.27., 일부개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시·군·구의 경우 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주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기금의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